궁능유적본부 공고 제2026 - 288호

궁능유적본부(종묘관리소) 2026년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4차) 최종합격자 명단 공고

2026년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4차) 최종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6일

궁능유적본부장

1. 합격자 명단

직 종	채용예정분야	합격자 응시번호
공무직	안전관리원(야간)	7번

(예비합격자) 해당없음

2. 합격자 서류 제출 안내

가. 제출기한 : 2026. 11. 30.(월), 오후 17시

나. 제출장소 : 종묘관리소 사무실

ㅇ 채용예정일 : 2026. 12. 1.(화) ※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 채용신체검사서(일반용) 1부 (* 건강검진 대체통보서로 대체)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붙임1 서식 작성)
-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사진(반명함판) 1매 및 통장사본 1부(급여지급용 계좌)

3. 기타사항 안내

가. 다음의 경우 합격 통보 및 채용 후에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 기재 발견 시

ㅇ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 건강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결격사유 확인 시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묘관리소 인사담당(02-2174-360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국가유산청 종묘관리소 공무직 등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정채용기준 제25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 귀하

「붙임2」

공정채용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국가유산청 종묘관리소 채용전형에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 등')에 의한 채용관련 부정한 청탁
2.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 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 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기타 채용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국가유산청 종묘관리소장 귀하

친인척 재직 여부 확인서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 중 본인의 친인척이 재직하고 있습니까? *친인척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인척	예 □ 아니요 □